

『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나. 발 의 자 : 김복자, 김상조, 김인배, 김태근, 박세진, 안장환
안주찬, 양진오, 윤종호, 한성희 의원 (10명)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2월 1일
제20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김복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(안 제7조제1항)
 - － 현행 결산검사 사항에 재무제표, 성과보고서,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은 추가하고, 계속비,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, 채권 및 채무의 결산,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은 삭제하며,
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(안 제7조제2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부서의견 : 조례 개정 타당함[기획예산담당관-14545(2016.11.8)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양 회 규

□ 본 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내용은

- 결산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(안 제7조제1항)
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(안 제7조제2항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

내용과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